**‘SSCC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1장 1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숭실 컴퓨팅 클럽이라고 하며 S.S.C.C를 약칭으로 한다.**

**제2조 (분과) 본 회는 숭실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학술분과에 소속한 정식 동아리이다.**

**제3조 (위치) 본 회의 본부는 숭실 대학교 안에 둔다.**

**제4조 (목적) 본 회는 컴퓨터를 통한 학술 연구 및 응용,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더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**

**제5조 (활동) 본 회는 전4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**

**1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석, 응용 및 연구 활동에 따른 활동.**

**2항 회원의 자질 향상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집회 활동.**

**3항 학교, 지역사회, 국가 발전을 위한 대외 집회 활동.**

**4항 위의 1,2,3,항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류 활동.**

**제6조 (지도)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지도를 둔다.**

**제 2장 회원**

**제7조 (회원의 정의) 회원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한다.**

**1항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, 정회원, 졸업회원과 휴학회원으로 분류한다.**

**2항 준회원은 소정양식의 서류를 제출한 재학중인 회원을 말한다.**

**3항 정회원은 동아리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한 재학중인 회원을 말한다.**

**1절 임원진은 새로운 정회원을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30일 이상 공고한다.**

**2절 예외 사항 발생시 임원진의 1/3이상 발의에 의해 정회원으로 승격시킨다.**

**4항 졸업회원은 숭실 대학교를 졸업한 정회원을 말한다.**

**5항 휴학회원은 입대 및 기타 사유로 휴학중인 회원을 말한다.**

**6항 중도이탈인원은 재학중이지만 동아리 활동을 중단한 인원을 말한다.**

**제8조 (권리와 위무)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**

**1항 본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**

**2항 정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.**

**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**

**4항 준회원 및 정회원은 매 학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.**

**5항 준회원의 과정을 마친 신규 정회원은 1년간 임원 활동의 의무를 진다. 즉 임원활동을 거부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강등된다.**

**6항 회원 간의 우선순위는 정회원에서 준회원 순으로 한다. 준회원 내에서는 신입생에서 재학생으로 한다.**

**7항 회비 납부기간을 가입이후 1 개월로 정한다. 이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. 이를 어길 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.**

**8항 중도이탈인원이 동아리 재등록을 하려면, 정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(단, 재등록한 인원은 다시 준회원 과정부터 시작한다.)**

**제 3장 임원**

**제9조 (구성)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**

**1항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학술 연구부장과 각 부장으로 구성된다.**

**2항 학술 연구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8조5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 한다.**

**임원은 8조5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 한다. (단, 정회원이 아닌 임원 대상자는 정회원 승격 심사를 실시한다.)**

**3항 8조 5항의 의무에 입각하여 재학 중인 신규 정회원은 1년간 임원활동을 하여야 한다.**

**4항 임원활동 중 휴학으로 인해 임원활동을 중지할 때는 다른 정회원에게 인계를 하도록 한다. 이후 복학하였을 때에는 남은 임원활동을 이어서 하도록 한다.**

**5항 동아리의 목적과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문들을 둔다. (단, 고문의 임명은 회장이 한다.)**

**제10조 (조직) 임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**

**1항 회장단은 회장, 부회장, 총무로 한다.**

**2항 회계, 교육, 기획은 기본적으로 둔다.**

**3항 각 부서를 임원진의 업무를 참조하여 임원진의 수에 따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.**

**제11조 (선출) 임원 선출은 다음에 따른다.**

**1항 회장의 임명은 지명으로 하고, 부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.**

**2항 총무, 각부 부장은 신임회장단과 차기 임원 대상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.**

**3항 기타 임원들은 신임 회장단이 선임한다.**

**4항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**

**5항 신임 임원진은 임원 조직표를 30일 이상 공고한다.**

**6항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단, 고문의 임기 제한은 없다.)**

**7항 임원진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, 기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.**

**제12조 (권리와 의무)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**

**1항 본회의 제반 사항 심의 조정권**

**2항 개정안 발의권**

**3항 임시 총회의 개최발의권**

**4항 각 임원들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.**

**제13조 (소집) 임원 회의는 정기 임원 회의와 임시 임원 회의로 구성된다.**

**1항 정기 임원 회의는 월 2회로 한다.**

**2항 임시 임원회의는 회장단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한다.**

**3항 임원회의에서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.**

**제14조 (탄핵) 임원의 탄핵은 다음을 따른다.**

**1항 임원의 탄핵**

**1절 임원진의 1/3이상의 발의로 탄핵이 제기된다.**

**2절 임원회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한다.**

**2항 회장의 탄핵**

**1절 정회원의 1/3이상의 발의로 탄핵이 제기된다.**

**2절 총회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한다.**

**3항 탄핵 대상자는 다시 임원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**

**제 4장 활동**

**제 15조(소모임)본회는 전 4조와 5조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소모임을 갖는다.**

**1항 재학중인 준회원과 정회원은 최소 1개 이상의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.**

**2항 소모임의 개설은 정회원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. 이는 임원진 회의에서의 승인하에 개설하도록 한다.**

**3항 각각의 소모임은 한 학기에 한번 이상의 재학중인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발표활동을 하여야 한다.**

**제 16조(총회)**

**1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.**

**2항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.**

**3항 본회의 정회원 1/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.**

**4항 의장은 총회동안 휴학회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**

**5항 총회의 의장은 부회장으로 한다.**

**6항 정기 총회는 매년 2회 각 학기 방학 후 3주 이내에 소집한다.**

**7항 특별사유 발생시 정회원의 1/3의 요구 또는 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**

**8항 정기 총회는 최소 14일전까지 통지한다. 임시 총회는 최소 5일전까지 공고한다.**

**9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**

**1절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**

**2절 회장 선출에 과한 사항**

**3절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**

**4절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**

**5절 기타 중요 사항**

**10항 총회의 의결은 다음에 따른다.**

**1절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한다.**

**2절 회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**

**3절 가부 동일시 의장이 의결한다.**

**제17조(업무)**

**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**

**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회장을 대행한다.**

**3항 교육부는 본 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총괄하며, 교육 및 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.**

**4항 편집부는 본 회의 모든 편집 활동, 도서 및 각종 자료관리, 서기업무 등을 주관한다.**

**5항 회계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.**

**6항 기획부는 본 회의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사무를 주관한다.**

**7항 홍보부는 본회의 교내, 교외의 홍보 및 각종 공고와 연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.**

**8항 홍보부는 섭외부의 기능도 하여, 대회협력 업무 및 각종 행사장소 섭외를 주관한다.**

**9항 유니코사 운영위원은 본회의 회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.**

**제18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년으로 하며, 매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로 한다.**

**제19조(회계) 임원진은 결산을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.**

**제20조(재원) 본 회는 다음의 항들로 재원을 삼는다.**

**1항 회비(신입 회원 포함)**

**2항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**

**3항 임원은 매 학기 초 해당학기의 모든 회비 징수 대상자를 파악하여 게시하고 잔액납부가 될 때까지 명단을 공고한다.**

**제21조(지출) 본 회의 지출은 전 4조와 5조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 이루어진다.**

**제22조(회비) 회비는 정회원 및 준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하며, 금액 및 방법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한다. 단, 정회원은 4학년 회비를 면제받는다.**

**제23조(발의) 회칙 개정 발의는 다음을 따른다.**

**1항 회장**

**2항 임원 과반수**

**3항 정회원 1/3이상**

**제24조(의결) 회칙 개정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.**

**1항 회칙 개정발의가 있을 시, 이 개정안은 총회 소집 14일전에 공고한다.**

**2항 총회 출석 2/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**

**제25조(공표 및 발효) 전 25조에 의해 의결된 회칙은 의결 즉시 공표하고 부칙에 따른다.**

**제26조(처벌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하여진 대로 처벌한다.**

**1항 정기 총회에 무단 결석한 자에 대하여 경고한다.**

**2항 본 회의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한다.**

**3항 본 회의 명예 훼손자 및 발전에 장애를 주는 자에게는 총회는 출석 2/3이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.**

**제27조(복지) 스터디 활동에 대한 복지는 다음을 따른다.**

**1항 스터디장은 1학기/방학동안 성실히 스터디를 진행했으면 회비의 50%가 환급된다.**

**2항 성실히 참여한 스터디원들 대상으로 1회 회식비가 지원된다.**

**3항 스터디 활동에 관련된 세부 규정은 “SSCC스터디세부규정”을 참고한다.**

**제 5장 동기회**

**제28조(설치) 임원진 이상의 기수는 동기회를 조직할 수 있다.**

**제29조(권리와 의무)**

**1항 각 동기회는 회당 동기회의 대표자를 임원 회의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.**

**2항 각 동기회는 총회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.**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(등록)**

**1항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따른다.**

**제 7장 부칙**

**제1조 전 각조에서 사용한 본 회란 숭실 컴퓨팅 클럽을 지칭한다.**

**제2조 준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신입 회원은 2학년 이하의 숭실 대학교 재학생이다.**

**제3조 본 회의 의결은 다음 순서를 따른다.**

**1. 회칙**

**2. 총회 및 정기 집행의 의결**

**3. 임원 회의 결정**

**4. 회장의 재량권**

**제4조 본 회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1992년 12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1997년 12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2002년 12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2021년 3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본 개정 회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**

**[변경사항]**

**1장 2조 (분과) 본 회는 숭실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학술분과에 소속한 정식동아리이다.**

**-> 본 회는 숭실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학술분과에 소속한 정식 동아리이다.**

**1장 4조 (목적) 본 회는 컴퓨터를 통한 학술 연구 및 응용,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더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**

**-> 본 회는 컴퓨터를 통한 학술 연구 및 응용,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더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**

**2장 8조 4항 준회원 및 정회원은 매학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.**

**->준회원 및 정회원은 매 학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.**

**2장 8조 6항 회원간의 우선순위는 정회원에서 준회원 순으로 한다. 준회원 내에서는 신입생에서 재학생으로 한다.**

**->회원 간의 우선순위는 정회원에서 준회원 순으로 한다. 준회원 내에서는 신입생에서 재학생으로 한다.**

**2장 8조 7항 회비 납부기간을 가입이후 1 개월로 정한다. 이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. 이를 어길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.**

**-> 회비 납부기간을 가입이후 1 개월로 정한다. 이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. 이를 어길 시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.**

**3장 9조 2항 학술 연구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8조5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한다.**

**-> 학술 연구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8조5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 한다.**

**3장 9조 4항 임원활동중 휴학으로 인해 임원활동을 중지할 때는 다른 정회원에게 인계를 하도록 한다. 이후 2학년 복학하여 임원활동을 하도록한다.**

**-> 임원활동 중 휴학으로 인해 임원활동을 중지할 때는 다른 정회원에게 인계를 하도록 한다. 이후 복학하였을 때에는 남은 임원활동을 이어서 하도록 한다.**

**3장 9조 5항 동아리의 목적과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문들을 둔다.**

**-> 동아리의 목적과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문들을 둔다. (단, 고문의 임명은 회장이 한다.)**

**3장 10조 1항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.  
->회장단은 회장, 부회장, 총무로 한다.**

**3장 10조 3항 각 부서를 임원진의 업무를 참조하여 임원진의 수에따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.**

**-> 각 부서를 임원진의 업무를 참조하여 임원진의 수에 따라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다.**

**3장 11조 2항 부회장, 총무, 갑부 부장은 신임회장단과 차기 임원 대상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.**

**->총무, 각부 부장은 신임회장단과 차기 임원 대상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.**

**3장 11조 4항 회장은 연임 할 수 없다.**

**->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**

**3장 11조 6항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**

**->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단, 고문의 임기 제한은 없다.)**

**4장 16조 1항 재학중인 준회원과 정회원은 최소 1개 이상의 소모임에 참여하여야 한다.**

**-> 재학중인 준회원과 정회원은 최소 1개 이상의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.**

**4장 16조 3항 각각의 소모임은 한 학기에 한번 이상의 재학중인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한 발표활동을 하여야 한다.**

**-> 각각의 소모임은 한 학기에 한번 이상의 재학중인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발표활동을 하여야 한다.**

**4장 17조 4항 의장은 총회동안 휴학회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.**

**-> 의장은 총회동안 휴학회원에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**

**4장 18조 8항 홍보부는 본회의 교내, 교외의 홍보 및 각종 공고와 연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.  
->****홍보부는 섭외부의 기능도 하여, 대회협력 업무 및 각종 행사장소 섭외를 주관한다.**

**4장 19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년으로 하며, 매년 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1일가지로 한다.**

**->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년으로 하며, 매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로 한다.**

**4장 21조 3항 임원은 매학기 초 해당학기의 모든 회비 징수 대상자를 파악하여 게시하고 잔액납부가 될 때까지 명단을 공고한다.**

**-> 임원은 매 학기 초 해당학기의 모든 회비 징수 대상자를 파악하여 게시하고 잔액납부가 될 때까지 명단을 공고한다.**

**4장 23조(회비) 회비는 정회원 및 준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하며, 금액 및 방법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. 단, 정회원 및 준회원은 졸업 전에 6학기를 납부해야 하며,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.**

**-> 회비는 정회원 및 준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하며, 금액 및 방법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한다. 단, 정회원은 4학년 회비를 면제받는다.**

**4장 27조(처벌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하여 진대로 처벌한다.**

**->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하여진 대로 처벌한다.**

**5장 29조(권리와의무)**

**->(권리와 의무)**

**5장 29조 1항 각동기회는 회당 동기회의 대표자를 임원 회의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.**

**-> 각 동기회는 회당 동기회의 대표자를 임원 회의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.**

**1장 1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숭실 컴퓨터 클럽이라고 하며 S.S.C.C를 약칭으로 한다.**

**-> 본 회의 명칭은 숭실 컴퓨팅 클럽이라고 하며 S.S.C.C를 약칭으로 한다.**

**2조 7조 2항 준회원은 소정양식의 서류를 제출한 2학년 이하의 숭실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.**

**-> 준회원은 소정양식의 서류를 제출한 재학중인 회원을 말한다.**

**2장 8조 2항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**

**-> 정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.**

**2장 8조 3항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**

**-> 모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**

**3장 9조 2항 학술 연구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8조5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 한다.**

**-> 임원은 8조5항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 한다. (단, 정회원이 아닌 임원 대상자는 정회원 승격 심사를 실시한다.)**

**3장 11조 1항 회장 및 학술 연구부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.**

**->회장의 임명은 지명으로 하고, 부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.**

**4장 17조 5항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**

**->총회의 의장은 부회장으로 한다.**

**4장 18조 7항 섭외부는 대회협력 업무 및 각종 행사장소 섭외를 주관한다.**

**->홍보부는 본회의 교내, 교외의 홍보 및 각종 공고와 연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.**

**4장 제22조(회비) 회비는 정회원 및 준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하며, 금액 및 방법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한다. 단, 정회원은 4학년 회비를 면제받는다.**

**-> 회비는 정회원 및 준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하며, 금액 및 방법은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한다. 단, 정회원은 4학년과 그 이상 학년의 회비를 면제받는다.**

**6장 1조 1항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호의 회칙에 따른다.**

**->** **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따른다.**

**7장 제1조 전 각조에서 사용한 본 회란 숭실 컴퓨터 클럽을 지칭한다.**

**->** **전 각조에서 사용한 본 회란 숭실 컴퓨팅 클럽을 지칭한다.**

**7장 제2조 준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신입 회원은 숭실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다.**

**->** **준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신입 회원은 2학년 이하의 숭실 대학교 재학생이다.**

**[제거사항]**

**3장 제15조 (복지) 임원 활동에 대한 복지는 다음을 따른다.**

**1항 1년간 임원 활동을 수행 중엔 회비가 반액 감면된다.**

**2항 11조 7항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회비가 전액 감면된다.**

**[새로운 안]**

**2장 7조 6항 중도이탈인원은 재학중이지만 동아리 활동을 중단한 인원을 말한다.**

**2장 8조 8항 중도이탈인원이 동아리 재등록을 하려면, 정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(단, 재등록한 인원은 다시 준회원 과정부터 시작한다.)**

**3장 14조 3항 탄핵 대상자는 다시 임원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**

**4장 27조 3항 스터디 활동에 관련된 세부 규정은 “SSCC스터디세부규정”을 참고한다.**

**제28조(복지) 스터디 활동에 대한 복지는 다음을 따른다.**

**1항 스터디장은 1학기/방학동안 성실히 스터디를 진행했으면 회비의 50%가 환급된다.**

**2항 성실히 참여한 스터디원들 대상으로 1회 회식비가 지원된다**